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실태

崔 明 眞

〈서울대 보건대학원후 · 둔촌중 교사〉

의료사고를 둘러싼 환자가족들의 진료방해행위로 병원업무가 마비되는 등 의료분쟁이 올해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의료분쟁의 양상은 날로 과격화 불법화되어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의료인들이 마음놓고 진료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이글에서는 의료분쟁의 방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보다는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지난 몇년간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의료분쟁의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의사의 의료분쟁경험도

대한의학협회공제회 가입자 중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표 1〉 조사대상 의사 중 의료분쟁발생현황

구분 년도별	조사대상수	분쟁발생건수*	발생률(%)	비고
1982	2,418	191	7.9	
1983	2,346	130	5.5	
1984	3,913	285	7.3	
1985	5,164	323	6.3	
1986	4,874	295	6.1	
계	18,715	1,224	6.5	

*발생건수는 의협 공제회에 처리 신청을 한 건수로 함.
자료: 대한의학협회 공제회^{주)}

공제회에 사건처리신청을 한 경우는 공제회사업 5년을 통산하여 1천 2백24건으로 가입연인원(조사대상 의사) 1만 8천 7백15명의 평균적 분쟁경험률은 6.5%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실제 발생건수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를 통해 추계할 수 있을 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을 자체가 아니라, 의료의 본질상 한 건의 분쟁이라도 그 형성파가 크다는 사실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의사들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분쟁경험률을 보면, 연평균 발생률 6.5%를 상회하는 과는 산부인과(15.8%)를 비롯하여 흉부외과(12.9%), 외과(11.4%), 정형외과(11.0%), 신경외과(9.9%)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입자수로는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일반과의 경우, 분쟁발생률은 4.8%로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표 2 참조).

이같은 실상은 바로 진료면에서 수술치료의 대중을 차지하는 과에서 그 수술치료의 난점이나 위험요인에 견주어 분쟁발생의 필연성이 내재한데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료분쟁의 유형

앞서의 자료에서 총 1천 2백24건의 의료분쟁건을 몇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진료과별 관련사항에 따라 분류해보면

주: 이하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표들은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자료임.

〈표 2〉 진료과목별 분쟁발생현황

진료과목	구분 조사대상외과수	분쟁발생건수	과별발생률(%)
내과	1,409	77	5.5
외과	1,739	198	11.4
소아과	1,794	48	2.7
전산부인과	2,165	342	15.8
정형외과	674	74	11.0
신경외과	203	20	9.9
문성형외과	52	1	1.9
안과	508	10	2.0
이비인후과	834	21	2.5
과피부과	270	6	2.2
비뇨기과	314	7	2.2
방사선과	177	.	.
목신경정신과	270	17	6.3
흉부외과	31	4	12.9
결핵과	32	.	.
마취과	4	.	.
임상병리과	7	.	.
소계	10,483	825	7.9
일반진료과목	8,232	399	4.8
총계	18,715	1,224	6.5

〈표 3〉 의료분쟁발생관련사항별 현황

유형	수술	주사	치료	오진	환자	마취	투약	수혈	중절	기타	계
발생건수	470	264	186	21	25	26	18	1	184	29	1,224
%	38.4	21.6	15.2	1.7	2.0	2.1	1.5	0.1	15.0	2.4	100.0

〈표 3〉에서 보듯, 수술에 관련된 사항이 38.4%를 차지했고, 주사부작용이 21.6%, 치료·처치에 관한 사항이 15.2%, 임신중절술이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진료과목별로 관련사항을 분석해 보면 〈표 4〉와 같다.

총 1천2백24건의 분쟁관련사항분포상 17개 전문과목에서 야기된 건수가 67.4%였고, 일반진료과에서는 32.6%를 야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전문과목별로 발생빈도가 높은 관련사항분포를 보면, 내과에서는 주사부작용이 54.5%로 가장 많고, 외과에서는 수술이 50.0%, 소아과는 주사가 58.3%, 산부인과는 수술 57.0%, 중절술 35.1%, 정형외과는

〈표 4〉 진료과목별 의료분쟁관련사항

과목	유형	수술	주사	치료	오진	환자	마취	투약	수혈	중절	기타	계
내과	7	42	16	6	1	1	1	3	77			
		(9.1)	(54.5)	(20.8)	(7.8)	(1.3)	(1.3)	(1.3)	(3.9)	(100.0)		
외과	99	32	40	4	11	4	4	4	198			
		(50.0)	(16.2)	(20.2)	(2.0)	(5.6)	(2.0)	(2.0)	(2.0)	(100.0)		
소아과	2	28	7	1	3	3	7	48				
		(4.2)	(58.3)	(14.6)	(2.1)	(6.3)	(14.6)	(100.0)				
전산부인과	195	9	3	4	5	2	120	4	342			
		(57.0)	(2.6)	(0.9)	(1.2)	(1.5)	(0.6)	(35.1)	(1.2)	(100.0)		
정형외과	18	8	39	2	2	3	2	74				
		(24.3)	(10.8)	(52.7)	(2.7)	(2.7)	(4.1)	(2.7)	(100.0)			
문신경외과	7	3	7	1	1	1	20					
		(35.0)	(15.0)	(35.0)	(0.05)	(0.05)	(0.05)	(100.0)				
성형외과	.	.	1	1			
			(100.0)						(100.0)			
과안과	8	2	20	10			
		(80.0)	(20.0)						(100.0)			
이비인후과	9	6	5	.	.	.	1	.	21			
		(42.9)	(28.6)	(23.8)			(4.8)		(100.0)			
목피부과	2	1	1	2	6			
		(33.3)	(16.7)	(16.7)	(33.3)				(100.0)			
비뇨기과	4	2	1	.	7			
		(57.1)	(28.6)				(14.3)		(100.0)			
표방사선과			
신경정신과	4	1	12	17			
		(23.5)	(5.9)	(70.6)					(100.0)			
방흉부외과	1	1	2	4		
		(25.0)	(25.0)						(50.0)	(100.0)		
결핵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소계	352	135	123	14	21	20	13	125	22	825		
		(78.7)	(51.1)	(66.1)	(66.7)	(84.0)	(76.9)	(72.2)	(67.9)	(75.9)	(67.4)	

치료처치가 52.7%로 나타났고, 신경외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 등에서는 수술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정신과는 환자관리가 70.6%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진료과의 경우는 주사가 32.3% 수술이 29.6%를 차지하고 있다.

분쟁발생관련사항별로는 수술이 분쟁발생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진료과목과 연결시켜 보면 각 과의 진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관련사항발생빈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사건상황별 분포로 보면 총 1천2백24건 중 질병상태악화로 이송진료 중 발생한 사건이 53.9%로 가장 많고, 사망이 37.5%, 후유장애가 4.2% 등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한편 분쟁처리에 있어 법적저촉 등의 문제로 확대된 경우를 보면 <표 6>가 같다.

이 자료의 조사대상수는 연인원 1만 8천 7백15명 이고, 이들이 경험한 총 의료분쟁건수는 기술한 바와 같이 1천 2백24건이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듯이 분쟁을 조정이나 기관에의 소구 등으로 처리한 건수는 1천 3백 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쟁건은 1 건이라도 사건의 처리상 일차적으로 형사건으로 취급되었다가 다시 민사나 합의로 처리되었을 때는, 의료인측에서는 2~3회의 분쟁처리과정을 겪은 것이므로 이를 모두 반영한 때문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볼 때 합의가 72.0%를 차지하는데, 이는 상호이해관계의 대립이 분쟁이므로 이를 조정하면 해결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료분쟁의 양상이 권리피해의 법적보호보다는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요구나 주장을 통해 권리 보호를 기하는 경향이 우세하다는 표현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물과의 부작용이 더 크게 현출된다 하겠다.

3. 최근의 추이

올해 발생했던 의료분쟁 가운데 한라병원(5월) 강도성모병원(6월) 청구성심병원(8월) 국민병원(9월) 등에서의 환자가족들의 시위행위는 의료권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의료계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이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족들은 병실이나 중환자실 점거 침대나 출입문 및 유리창 등 기물을 파괴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진료마비는 물론 병원을 장시간에 걸쳐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특히 청구성심병원에서는 환자가 수술도중 숨지자 가족들이 깨진 유리병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와 의사와 간호사 환자 등 20여명을 12시간 동안 중환자실에 가둬놓는 소동을 벌였다.

이처럼 최근의 의료분쟁 양상은 진료를 마비시키는 선을 넘어 직접적으로 의료인에게 피해를 가할 정도로 과격해지고 있다.

이를 다시 분쟁유형에 따라 지급된 보상액으로 보면, 총합의액 43억 3천 6백92만원 중 수술로 인한 경우의 보상액이 47.5%를 차지했고, 분쟁건수에 비해 보상액의 비중이 큰 것은 마취에 의한 경우로 건당 1천 4백60만 2천원의 보상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한편 사건상황에 따른 보상액합의현황은 <표 9-1>

<표 5> 사건상황별 의료분쟁현황

구분	후유장애				사 망					
	분쟁 이송 건수	이송 진료 건수	치 료 중 송	이 소 계	치 료 중 송	이 귀 가	귀 소 계	기 타		
발생건수	1,224	660	21	31	52	193	246	20	459	53
%	100.0	53.9	1.7	2.5	4.2	15.8	20.1	1.6	37.5	4.3

<표 6> 의료분쟁에 대한 처리상황별 분포

구분	합 의	기관피소	기 타	계
사건수				
처리건수	937	339	25	1,301
%	72.0	26.1	1.9	100.0

<표 7> 연도별 보상지급액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연도별	발생건수	합의건수	합 의 액	건당합의액
1982	191	138	66,274	480.2
1983	130	94	45,356	482.5
1984	285	226	104,564	462.7
1985	323	254	121,927	480.0
1986	295	225	95,571	424.8
계	1,224	937	433,692	462.9

<표 8> 분쟁유형별 합의보상액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유형	발생건수	합의건수	합의보상액(%)	건당합의보상액
수 술	470	371	206,202 (47.5)	555.8
주 사	264	199	72,939 (16.8)	366.5
치 료치 치	186	127	46,935 (10.8)	369.5
오진시비	21	11	2,710 (0.6)	264.4
환자관리	25	17	9,509 (2.2)	559.4
마 취	26	24	35,284 (8.1)	1470.2
투 약	18	11	2,194 (0.5)	199.5
중 절 술	184	150	48,277 (11.1)	321.8
기 타	30	27	9,642 (16.8)	357.1
계	1,224	937	433,692(100.0)	462.9

과 같다. 여기서 보면 총합의보상액 중 사망으로 인한 경우의 지급총액이 전체의 60.7%에 달하나, 건당보상액은 이송치료 중에 발생한 후유장애의 경우에 가장 높아 1천19만 7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9-1〉 사건상황별 합의보상액 현황

(단위: 만원)

	발생건수	합의건수	합의보상액(%)	건당보상액
이송진료	660	486	116,379 (26.8)	239.5
후유장애	21	20	18,725 (4.3)	936.3
사망	31	28	28,552 (6.6)	1019.7
소계	52	48	47,277 (10.9)	984.9
치료중	193	135	87,507 (20.2)	648.2
이송진료중	246	218	168,231 (38.8)	771.7
귀가	20	16	7,641 (1.8)	477.6
소계	459	369	263,379 (60.7)	713.8
기타	53	34	6,657 (1.5)	195.8
계	1,224	937	433,692(100.0)	462.9

〈표 9-2〉 사건상황별 합의보상액 분포

(단위: 만원)

보상액	합의보상액 분포										
	0	1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상황별	1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계	
이송진료	161	273	46	5	1	486	
후유장애	1	18	14	6	3	3	2	.	.	48	
사망	37	164	87	43	16	14	5	1	1	369	
기타	17	12	1	1	2	1	.	.	.	34	
계	216	467	148	54	20	20	8	1	1	2	937
	(23.1)	(49.8)	(15.8)	(5.8)	(2.1)	(2.1)	(0.9)	(0.1)	(0.1)	(0.2)	(100.0)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몇 건의 고액보상건수로 인하여 평균보상액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이고, 실제 합의보상액 규모의 분포를 보면 총합의건수 9백37건 중 72.9%가 500만원 이내의 보상액으로 합의되었고, 이중 23.1%는 100만원 이내에서 합의된 것을 볼 수 있다(표 9-2 참조).

이를 다시 수진자연령에 따라 지급된 보상액의 분포로 보면, 분쟁의 발생건수는 20대에 높게 나타나나, 고액보상건수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빈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이는 보상액의 기준에, 남은 생명기간에 대한 고려보다는 부양가족 등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풀이할 수 있겠다.

4. 맺 음 말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증대해감에 따라 앞으로 의료

〈표 10〉 수진자 연령별 합의보상액 분포

(단위: 만원)

보상액	발생건수	합의건수	합의보상액 분포									
			0	1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연령별	1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계		
태아	35 (2.9)	24	2	18	3	1		
1세미만	118 (9.6)	80	26	49	4	.	.	1	.	.		
1~4	106 (8.7)	78	16	54	4	4		
5~9	46 (3.8)	34	11	16	5	.	1	.	1	.		
10~14	28 (2.3)	23	7	11	3	2		
15~19	54 (4.4)	36	5	22	3	6		
20~24	127 (10.4)	108	25	49	16	9	3	4	2	.		
25~29	233 (19.0)	183	42	78	34	11	9	6	2	1		
30~34	116 (9.5)	91	18	40	23	4	3	2	1	.		
35~39	84 (6.9)	63	20	31	6	4	.	.	1	.		
40~44	67 (5.5)	52	11	27	8	4	.	1	1	.		
45~49	62 (5.1)	50	8	20	15	2	2	3	.	.		
50~54	51 (4.2)	42	9	16	10	4	.	1	.	1		
55이상	97 (7.9)	73	16	36	14	3	2	2	.	.		
계	1,224 (100.0)	937	216	467	148	54	20	20	8	1	1	2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을 비롯한 의료계가 의료분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와 법에 기초한 대응책 마련과 신중한 사후처리방안을 필요로 한다.

의료인은 신이 아니다. 때로는 과오를 범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다. 의료인의 잘못으로 환자에게 해가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마땅히 법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환자가족들처럼 물질적 보상이나 진료비감면을 받고자 의료기관을 점거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된다면 이것은 의료인들의 방어진료 내지는 진료기피현상을 불러와 궁극적으로는 환자들 자신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실태분석에 기초한 정부차원의 근본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